

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752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4년 4월 25일

제안자 : 보건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보조기기 구매, 대여 및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보조기기의 구매, 대여 및 제작 등에 관한 사항(안 제8조제2항 제3호)을 삭제하고 센터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.
(안 제8조제2항제4호)

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8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, 같은
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센터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〈수정안 조문대비표〉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8조(운영위원회 운영) ① (생 략)	제8조(운영위원회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	제8조(운영위원회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〈신 설〉	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p>1.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·평가에 관한 사항</p> <p>2. 센터의 운영 방법에 대한 사항</p> <p>3. 보조기기의 구매, 대여 및 제작 등에 관한 사항</p> <p>4. 보조기기 수요조사에 따른 구매 계획 및 재정지원요구 등에 관한 사항</p> <p>5. 그 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</p>	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p>1.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·평가에 관한 사항</p> <p>2. 센터의 운영 방법에 대한 사항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삭 제〉</p> <p>3. 보조기기 수요조사에 따른 구매 계획 및 재정지원요구 등에 관한 사항</p> <p>4. 센터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</p> <p>5. 그 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</p>
② (생 략)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
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.

1.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·평가에 관한 사항
2. 센터의 운영 방법에 대한 사항
3. 보조기기 수요조사에 따른 구매 계획 및 재정지원요구 등에 관한
사항
4. 센터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
5. 그 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〈신·구조문대비표〉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운영위원회 운영) ① (생략) <u><신설></u>	제8조(운영위원회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 <u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.</u> 1. <u>센터 운영계획의 수립·평가에 관한 사항</u> 2. <u>센터의 운영 방법에 대한 사항</u> 3. <u>보조기기 수요조사에 따른 구매 계획 및 재정지원요구 등에 관한 사항</u> 4. <u>센터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</u> 5. <u>그 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</u>
② (생략)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